

사단법인 한국작가회 부천시부 정관

2018.1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 부천시부”라 하며 경기도 부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 (목적) : 본 법인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①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창작과 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
2.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사업
3.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4. 문학예술 정책 개발 사업
5. 민족문학의 저변 확대와 교육을 위한 사업
6. 문예지 발간 및 문학관련 출판사업

제4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

-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인으로서 해당 회원입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이 부결될 때는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명예회원이나 준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본 법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 ②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 ③ 회비의 납부

제8조 (회원 탈퇴의 자유,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제명) :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회원이 자격상실·자격정지 또는 제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격상실 :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1년 후에 재가입원서를 낼 수 있다.
- ② 자격정지 및 제명 :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자문위원

제9조 (임원) : 본 법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3명 이내
- ③ 분과별 회장 및 이사 10명 이내
- ④ 사무국장 1명, 사무총장 1명
- ⑤ 감사 2명
- ⑥ 필요시 편집위원장 및 자문위원 영입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 ①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대행체제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 (구성) :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2조 (소집) :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1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본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통지서를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전직 회장단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다.

제13조 (정족수) : 총회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거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 (재산) :

- ① 본 법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친다.

제17조 (세입 등) : 본 법인 세입은 회원의 회비·보조금·후원금·사업수익금·기타 수입으로 총당한다. 단, 정부 및 대기업의 보조 또는 후원금은 본 법인 총세입의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9조 (예산편성 및 장기차입) :

- ①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법인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감사) : 감사는 본 법인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한다.

제21조 (보수) :

-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본 법인 사업의 실무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사무처 직원과 기타 실무집행을 맡은 회원에 대한 보수는 사무총장이 정해서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장 사무처

제22조 (설치) :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3조 (구성과 운영) :

-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원은 사무총장이 선임하여 이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사무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 (법인의 해산)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5조 (잔여재산 귀속) : 본 법인이 해산한 때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 (정관의 변경) :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라고 칭 한다. ㄱ.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부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방문학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학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 (2) 향토문학자료의 발굴 및 수집, 보존
- (3) 타 지역(국내, 외)과의 문학교류
- (4) 문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학교육사업과 사회활동 시행
- (5)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사업
- (6) 기타 지역 문학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수익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전액은 본회의 기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정회원 및 신입회원은 이 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 정회원 1) 아래 각호에 적합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각 신문의 신춘문에 당선자
- 3) 각 문예지 신인상 당선자 및 추천 원료된 자
- 4) 각종 문학상 당선자
- 5) 개인 문집을 발간한 자
2. 신입회원 1) 신입회원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2) 신입회원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3. 특별회원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과거 군산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문학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7조(권리)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 3) 단 지부회장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 4) 단, 지부회장선거직전 6개월 이전에 가입하고 회비납부자만 선거권을 갖는다.
 - 5) 회비 납부자라도 본 회의에 최근 2년 동안 2/3 이상 불참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이 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월례회 참석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준수
 - 3) 임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제9조(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지부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상벌 및 징계)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당 해년 동안 제8조의 1항 및 3항을 지키지 않고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영구체명할 수 있다.
- 3) 최근 2년 동안 회비 미납 및 미 참석자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자격 정지를 해제할 시는 신입회원 가입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재 가입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부회장 1인
- (2) 부지부장 2인(수석부지부장 1인 차석부지부장 1인을 남, 여 각 1명씩)
- (3) 이사의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단 지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유고시에는 집행부 직급순서에 따라 보선을 실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 5인은 회원이 선출하고, 3인은 지부회장이 임명한다.)
- (4) 감사 2인
- (5) 원로회원(7인 이내)

- (6) 고문(직전회장으로 한다.)

(7) 편집장

- (8) 임원회비는 지부회장 년 300,000원 부지부장 년 200,000원 다른 임원은 년 100,000원으로 한다.(단, 임원회비속에는 년 회비를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 (1) 지부회장은 정관 7조 5항에 위배되지 않고 10조 2항을 적용받지 않은 자로서 회원들로부터 15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시무국에 접수한다. 원로회의는 접수된 후보자중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1명을 최종 조율하여 총회에서 선출토록 한다. 단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총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전 회원들에게 회장 선출을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 임원이 임기 중 권위된 때에는 권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감사는 (사)한국문인협회 등록된 자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원로회의 위원은 군산문협 회원으로 7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서 등단 18년 이상인자 중에서 지부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5) 편집장은 지부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기)

- (1)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는 원로회 3년, 이사 2년, 부지부장 2년, 감사 2년, 편집장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사퇴)

(1) 임원은 지부회정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2) 단, 위(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지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군산지부를 대표하여 분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수석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분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부회장 또는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지부 운영, 재정 상태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나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원로회의는 12조 1항을 적용받으며 군산문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지문을 한다.

(6) 직전 지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운영진반에 관한 지문을 할 수 있다.

(7) 군산문화상 운영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 단, 위원장직을 사임할 경우는 지부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8)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서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유인물을 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정기모임 4/4분기별 1회씩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아래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지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단, 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1)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비 완납자 중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지부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분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대여, 증여, 취득, 기금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재정(회계)

제19조 본회의의 재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 기본재산과 신입회원 입회금, 년 회비 및 기타 수익 사업으로 하며 문화기금은 지부회장 책임하에 지부 회장단이 관

리한다.

(2) 본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3) 기 조성된 기금은 제3조, 제4조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20조(예산편성) 본회의 제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을 총당한다.

(1) 임회비 금 5만원.

(2) 연회비 6만원은 8만원으로 인상하며 임원의 회비는 11조 8항을 적용받는다. 단, 군산문인협회보 광고모집회원에게는 광고금액의 10%를 지급한다.

(3) 보조금 또는 지원금, 후원금, 기타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업무 및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단 감사는 수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지부 회장에게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지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지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지부회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24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운영규정) 본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신무군산문화상 운영규정을 둔다

제26조(신설조문) 본회는 정관 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

업을 2016년부터 시행한다.

(1) (사)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 부설 군산문예대학 개설

1) 운영계획은 집행부에서 마련,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은 지부회장이 맡으며 관리운영은 집행부에서 교무 사무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2)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단, 위원장이 장르별 추천을 하면 지부회장이 임명한다. 4개 위원장은 임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시분과위원회

2) 소설, 수필분과위원회

3) 시낭송위원회

4) 아동문학위원회

(3)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와 친목도모를 위해 상조원회를 신설한다. (단,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가입되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 운영한다.)

(4) 업무의 원활을 위해 사무국장을 보좌할 사무차장을 둔다. (임명은 사무국장이 하며 지부 회장에게 보고한다.)